

瑞山市市税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6. 19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6. 21
- 라. 上程日字 : 1999. 6. 25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稅務課長 安 光 來)

가. 提案理由

-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맞게 “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고북, 수석 농공단지내의 휴·폐업된 공장에 2003. 12.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
 -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.

-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표준인에 의하여
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“농공단지 대체입주자”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,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7호
의결년월일	1999. 6. (제 회)

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6. 19

서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25

제출년월일 : 1999. 6. /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고북·수석농공단지내의 휴·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경감(안 제 23조의 1)
-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그 재산 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 함(안 제23조의 2)

3. 참 고

가. 근거내용

- 허 가 :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(세정 13400-616)

나. 예산조치

-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'99. 4.24~'99. 5.13(20일간)
- 예고결과 : 의견 접수사실 없음

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23조의1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1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: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(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)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1. 고북농공단지
2. 수석농공단지

제23조의2(서산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서산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·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·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및 재산 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면제(공제)한다. 다만,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23조의1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(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)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북농공단지 2. 충석농공단지
<p><신 설></p>	<p>제23조의2(서산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서산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·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·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 터 15년간 전액 면제(공제)한다. 다만,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</p>